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서울청정 맑음!
서울교육 밝음!

2026년 학교법인 현강학원 및 서울컨벤션고등학교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2026. 8.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1. 감사배경 및 목적

- 2026년도 자체감사 계획(수정안)(감사관-20883, 2025. 12. 31.)
- 2026년 사립학교(법인) 종합감사 추진계획(안)(감사관-1535, 2026. 1. 30.)
- 2026년 상반기 사립학교(법인) 종합감사 실시 통보(감사관-2214, 2026. 2. 11.)
-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적법·타당성 등 점검, 책무성 및 투명성 강화
- 각종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대안 제시로 학교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 감사 대상기관: 학교법인 현강학원 및 서울컨벤션고등학교
- 감사범위: 2023. 3. 1. ~ 2026. 4월 감사일 현재 기간 동안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 중점

- 학교법인회계 운영 및 학교회계(예·결산 및 세출)
- 학교발전기금 및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학사(성적관리, 생활교육, 학교생활기록부)
- 교직원 인사관리(채용 전형,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 계약(물품, 용역, 공사) 및 물품·재산관리
- 세입(전입금, 수익자부담수입 등), 세입·세출외현금
- 교직원 복무 관리 및 급여(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 등)
- 감사처분 시정 요구사항 이행 여부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2026. 4. 21.(화) ~ 4. 24.(금) [4일간]
- 감사인원: 감사단장 외 6명

5. 처분사항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참고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 번호
1

서울특별시교육청

기 관 주 의 · 주 의 요 구

제 목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서울컨벤션고등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서울컨벤션고등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소속 학생들의 교과학습 발달상황 등 학교생활기록부 전반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¹⁾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매년 발행)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1) 학교생활기록: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종합 기록이어야 하며,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평소 학생을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와 같이 작성·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 중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제1항 제5호에서 ‘학생의 재학 중 이수 교과, 과목명, 평가 결과 및 학습활동의 발전 여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및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매년 발행)에 따르면, 교과담당교사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에 근거하여 학생 개인의 성취과정과 성취특성이 명료히 드러나도록 작성하되, 수업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단순 나열이나 이미 성취기준에 명시된 지식의 단순 서술은 지양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컨벤션고등학교 교사 ○○○는 2025학년도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하면서 교사가 평소 학생을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의 성취특성이 명료히 드러나도록 입력하지 않고, [표]와 같이 ‘체육’ (2학년 1학기 57명) 및 ‘스포츠 생활’ (3학년 1학기 70명) 등 2개 과목에서 수강 학생

총 214명 중 127명에게 동일·유사한 내용을 중복하여 기재한 사실이 있다.

[표] 2025학년도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중복 기재 내역

담당	과목명	학년/학기	기재 대상		기재 내용
교사 ○○○	체육	2학년 1학기	♣♣♣ 등 5명	11명	수업 중 운동 기능 향상을 위한 노력과 태도가 남다르며, 기초 체력과 각 종목별 기능이 고루 우수하고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는 등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함.
	스포츠 생활	3학년 1학기	♣♣♣ 등 6명		
	체육	2학년 1학기	♣♣♣ 등 5명	11명	신체 조건이 우수하고 기초 체력이 뛰어나며 움직임이 신속하고 특히 순발력이 좋아 제자리 멀리뛰기를 잘함.
	스포츠 생활	3학년 1학기	♣♣♣ 등 6명		
	체육	2학년 1학기	♣♣♣ 등 4명	11명	우수한 체력과 체격 조건으로 다양한 운동 종목에서 고른 기량 향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즐거운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로 스트레칭 및 준비운동에 임하고 있음.
	스포츠 생활	3학년 1학기	♣♣♣ 등 7명		
	체육	2학년 1학기	♣♣♣ 등 5명	11명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건강 유지를 위한 올바른 운동 습관을 실천한 결과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음.
	스포츠 생활	3학년 1학기	♣♣♣ 등 6명		
	체육	2학년 1학기	♣♣♣ 등 4명	10명	수업 시간에 열의가 있으며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함. 수업 태도가 바르고 성실하여 점차 성적 향상이 기대됨.
	스포츠 생활	3학년 1학기	♣♣♣ 등 6명		
	체육	2학년 1학기	♣♣♣ 등 4명	10명	운동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기본적인 체력 요소를 잘 갖추고 있으며 움직임이 신속하고 체육 교과의 각 종목별 운동 수행 능력이 고루 우수함.
	스포츠 생활	3학년 1학기	♣♣♣ 등 6명		
	체육	2학년 1학기	♣♣♣ 등 4명	9명	운동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기초 체력 및 기능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는 등 모든 활동에 적극적인 학생임.
	스포츠 생활	3학년 1학기	♣♣♣ 등 5명		
	체육	2학년 1학기	♣♣♣ 등 4명	9명	운동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자신의 부족한 체력 요소를 파악하고 운동의 원리를 활용하여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계획하며 실천하는 모습을 보임.
	스포츠 생활	3학년 1학기	♣♣♣ 등 5명		
	체육	2학년 1학기	♣♣♣ 등 5명	9명	건강에 관한 지식과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수업 시간 내 발표와 대답을 잘하고 성실하여 점차 성적 향상이 기대됨.
	스포츠 생활	3학년 1학기	♣♣♣ 등 4명		
	체육	2학년 1학기	♣♣♣ 등 4명	9명	건강한 생활을 위해 자신의 신체 특성에 맞는 운동 방법과 생활 환경을 고려한 운동 계획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실천함.
	스포츠 생활	3학년 1학기	♣♣♣ 등 5명		

담당	과목명	학년/학기	기재 대상		기재 내용
	체육	2학년 1학기	♣♣♣ 등 4명	9명	계획적이고 꾸준하게 체력 운동을 하여 모든 종목에서 우수한 기록을 보이며 특히 근지구력과 심폐지구력이 좋음.
	스포츠 생활	3학년 1학기	♣♣♣ 등 5명		
	체육	2학년 1학기	♣♣♣ 등 5명	9명	수업 시간에 열의가 있으며 학생건강체력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여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스포츠 생활	3학년 1학기	♣♣♣ 등 4명		
	체육	2학년 1학기	♣♣♣ 등 4명	9명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건강체력평가에 큰 흥미를 보이며 즐거운 수업 분위기를 조성함.
	스포츠 생활	3학년 1학기	♣♣♣ 등 5명		
소계			2학년 57명 3학년 70명	127명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3종을 학생 9명~11명에게 중복 기재 ※ 2학년 5개 학급 학생 98명 중 57명(58%) ※ 3학년 6개 학급 학생 116명 중 70명(60%)

※ 자료: 서울컨벤션고등학교 제출자료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서울컨벤션고등학교장은

앞으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 시 평소 학생을 직접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의 성취특성이 드러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점검·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학교법인 현강학원 이사장은

이 건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 의 요 구

제 목 용역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서울컨벤션고등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서울컨벤션고등학교에서는 학교시설의 청결 유지 및 야간·휴일 경비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청소용역 및 당직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에 따르면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청소용역 및 당직용역과 같은 인력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에 근거하여 용역 투입인원 및 근로시간의 적정 여부, 관련 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 등의 반영 여부가 견적서(산출내역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계약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따라 용역계약 대금 지급 시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사후정산하여 지급함으로써 과다 또는 과소 지급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서울컨벤션고등학교에서는 2023학년도부터 2026학년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청소 및 당직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표]와 같이 청소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 및 금액의 적정 여부 확인 없이 업체로부터 월별 금액만 기재된 견적서(산출내역서)를 제출 받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계약금액의 적정성 확인 및 사후 정산이 불가하게 하였다. 또한, 당직용역의 경우 견적서(산출내역서)는 세부 항목이 포함된 형태로 제출받았으나 2023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에 대하여 사후정산을 실시하지 않아 실제

보험료 납부 내역에 맞는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된 사실이 있다.

[표] 청소·당직 용역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부적정 내역

(단위: 원)

구분	학년도	계약업체명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명시 여부				보험료 등 사후정산 여부	비고
				투입 인원	근로 시간	시급	보험료 등		
청소 용역	2023	-	-	-	-	-	-	-	-
	2024	◇◇◇◇◇	17,878,500	x	x	x	x	x	6개월 계약
	2025	◇◇◇◇◇	42,471,000	x	x	x	x	x	
	2026	◇◇◇◇◇	42,511,000	x	x	x	x	해당없음 (정산일 미도래)	
당직 용역	2023	◇◇◇◇◇	38,280,000	0	0	0	0	△	마지막월 용역비가 18,440원 감액 지출 되었으나 내역 및 증빙 없음
	2024	◇◇◇◇◇	42,240,000	0	0	0	0	x	
	2025	◇◇◇◇◇	45,480,000	0	0	0	0	x	
	2026	◇◇◇◇◇	46,920,000	0	0	0	0	해당없음 (정산일 미도래)	

※ 자료: 서울컨벤션고등학교 제출자료 및 업무관리시스템(K-에듀파인)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서울컨벤션고등학교장은

- ① 앞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용역 투입인원, 근로시간, 최저임금 및 4대 보험료 등 세부 산출내역이 포함된 견적서(산출내역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에 대해 반드시 사후정산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② 2026학년도 청소용역 계약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역 투입인원, 근로시간, 최저임금 및 4대 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세부 항목이 반영된 견적서(산출내역서)를 업체로부터 재징구 받고, 2023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체결한 당직용역 계약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 사후정산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현강학원 이사장은

이 건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3

서울특별시교육청

기 관 주 의 · 시 정 요 구

제	목	방과후학교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서울컨벤션고등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서울컨벤션고등학교에서는 2023년도부터 2026년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 지침에 따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고 있다.

2. 방과후학교 운영 절차 미준수

가.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및 「중등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수강료 산출 기준, 강사

채용 및 위탁업체 선정 계획 등을 포함한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년 시작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심의를 거쳤으나 실행단계에서 당초의 운영계획(내용 및 방법)이 대폭 변경되고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중요 사항일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방과후 학교 강사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당해 연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해당 강좌를 정해진 시간에 운영하고, 수업 시작 전 반드시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출결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서울컨벤션고등학교 교사 ○○○는 2023학년도 4기 방과후학교 ‘언어 및 영어능력직무적성검사 대비반’을 운영하면서 [표 1-1]과 같이 개인 사유(◇◇◇)로 동일 과목의 다른 강사와 날짜를 변경하여 수업을 실시했음에도 수업 변경에 대한 학교장 결재를 득하지 않고 당초 계획한 날짜에 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출석부를 허위 작성하는 등 방과후학교 운영을 소홀히 하였다.

[표 1-1] 2023 4기 방과후학교 ‘언어 및 영어능력직무적성검사대비반’ 운영 부적정 내역

학년도	방과후 과목명	강사명	대체 강사명	계획일시 (출석부 기준)	실제 강의일시	비고
2023	언어 및 영어능력 직무적성검사 대비반	○○○ ²⁾	▲▲▲	2023.11.27. (16:20~18:10)	2023.12.22. (16:20~18:10)	수업 변경에 대한 근거(증빙) 자료 없음

※ 자료: 서울컨벤션고등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교사 ○○○은 2025학년도 3기 방과후학교 ‘수능대비 생활과 윤리’를 운영하면서 [표 1-2]와 같이 개인 사유(◇◇◇)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2) 강사 ‘○○○’는 2023.11.27.(8:00~16:00)에 병가를 사용함

거쳐 확정된 방과후학교 운영 기간에 수업을 할 수 없음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학교장 결재 없이 자의적으로 방과후학교 수업 과목과 강사를 교체하였으며, 방과후 학교 운영 변경 계획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지 않는 등 방과후학교 운영을 소홀히 하였다.

[표 1-2] 2025 3기 방과후학교 '수능대비 생활과 윤리' 운영 부적정 내역

학년도	구분	방과후 과목명	강사명	운영 기간	운영차시	운영시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비고
2025	계획	수능대비 생활과 윤리	○○○ ³⁾	2025. 9. 9. ~ 10. 31.	20차시	16:20~18:10(화) 15:20~17:10(금)	○	
2025	실제	한국사	○○○	2025. 9. 9. ~ 10. 1.	12차시	16:20~18:10(화) 15:20~17:10(금)	X	변경계획 미수립
		수능대비 생활과 윤리	○○○	2025. 10. 24. ~ 10. 31.	8차시			

※ 자료: 서울컨벤션고등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3. 방과후학교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가.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방과후학교 길라잡이」(교육부, 매년 발행) 및 「중등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교육부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 강사 인력풀을 활용하거나 관련 누리집을 활용한 공고·평가·선정한 외부 강사(개인/기관·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운영을 희망하는 교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강사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강사료 지급 시에는 프로그램 활동일지, 학생 출석부 등의 증빙을 원본으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계약부서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강사 대장, 결보강일지, 프로그램

3) 강사 '○○○' 은 면담결과 2025. 9. 9. ~ 10. 1.까지 ◇◇◇으로 방과후학교 수업을 할 수 없어 한국사 담당 '○○○' 강사에게 12차시 수업을 요청함

운영일지, 계약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서울컨벤션고등학교에서는 [표 2]와 같이 2023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교사 ○○○ 등 7명이 방과후학교 내부 강사로 근무하면서 해당 교사가 수업 일에 조퇴, 연가 등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지 않았음에도 지도한 것으로 출석부 교사 확인란에 서명하고, 작성된 출석부를 기준으로 품의하여 금600,000원을 과오지급하였다.

[표 2] 2023~2025학년도 방과후학교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내역

(단위: 원)

연번	날짜	방과후 과목명	강사명	강의시간 (출석부 기준)	복무 상황		강사수당 지급액
					유형	시간	
1	2023.9.12.	SMAT-A(서비스경영능력)	○○○	16:20~17:10	연가	08:00~16:00	40,000
2	2023.9.27.		○○○	15:20~16:10	조퇴	13:00~16:00	40,000
3	2023.9.27.	엑셀	○○○	15:20~17:10	조퇴	13:00~16:00	80,000
4	2023.11.22.	시창청음	○○○	15:20~17:10	조퇴	15:00~16:00	80,000
5	2024.4.24.	어쿠스틱기타 초급	○○○	15:20~17:10	41조 연수	12:00~16:00	80,000
6	2024.5.1.	조리기능사 필기	○○○	15:20~17:10	조퇴	15:00~16:00	80,000
7	2024.5.1.	SMAT-A(서비스경영자격증)	○○○	15:20~16:10	조퇴	13:00~16:00	40,000
8	2024.5.24.	CRS여행예약시스템반	○○○	15:20~16:10	조퇴	12:10~16:00	40,000
9	2024.6.24.		○○○	16:20~17:10	연가	08:00~16:00	40,000
10	2025.5.1.	농구	○○○	15:20~17:10	조퇴	12:00~16:00	80,000
계							600,000

※ 자료: 서울컨벤션고등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서울컨벤션고등학교장은

- ①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편람」 등 관련 지침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로 확정된 계획에 따라 수업을 정해진 시간에 운영하고, 운영 내용이 대폭 변경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재심의를 받기 바랍니다.
- ② 또한,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방과후학교 강사수당 지급 시 수업 실시에 증빙되는 서류를 철저히 관리·확인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과오 지급된 강사수당 금600,000원은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등에 따라 관련자로부터 환수하여 세입 조치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과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③ 이 건 관련으로 “기관주의” 처분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서울컨벤션고등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서울컨벤션고등학교에서는 2023년도부터 2026년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시설공사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2. 시설공사 도급자 선정 부적정

가.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사립학교에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전기공사)에 따른 전기공사를 추진할 때에는 같은 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및 제4조(공사업의 등록)에 따라 전기공사업으로 등록 된 전기공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서울컨벤션고등학교에서는 [표 1]과 같이 “운동장 조명공사”인 전기공사를 실시하면서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정보통신공사업으로 공사 내용에 적합한 건설업의 면허 보유자가 아닌 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1] 시설공사 도급업체 면허 부적정 계약 내역

(단위: 원)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면허	정당면허	비고
운동장 조명공사	♣♣♣♣♣ 대표 △△△	27,700,000	2023. 6. 7. ~2023. 6. 16.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 자료: 서울컨벤션고등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3.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미계상

가.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3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전기·통신·소방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환경관리비⁴⁾를 계상하여야 한다.

4) 환경관리비란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을 말하며,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구분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서울컨벤션고등학교에서는 [표 2]와 같이 “지하주차장 바닥개선공사” 외 2건의 건설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9,715원과 “지하주차장 바닥개선공사” 외 4건의 건설공사에 대한 환경보전비 394,741원을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미계상 내역

(단위: 원)

연번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미계상 비용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미계상 금액	환경보전비 미계상 금액	계약기간
1	지하주차장 바닥 개선 공사	◇◇◇◇◇◇◇◇	29,800,0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784,815	82,757	2025. 2. 27. ~2025. 3. 3.
2	운동장 조명공사	◇◇◇◇◇◇◇◇	27,700,0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38,360	-	2023. 6. 7. ~2023. 6. 16.
3	서울컨벤션고 교문시설개선 통신공사	◇◇◇◇◇◇◇◇	21,800,0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06,540	-	2023. 8. 1. ~2023. 8. 29.
4	서울컨벤션고 학생안전강화사업 야외데크 안전개선 공사	◇◇◇◇◇◇◇◇	45,390,000	환경보전비	-	85,241	2024. 7. 19. ~2024. 8. 18.
5	서울컨벤션고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건축 공사	◇◇◇◇◇◇◇◇	44,770,000	환경보전비	-	99,673	2025. 12. 15. ~2026. 1. 30.
6	서울컨벤션고 야외데크공사	◇◇◇◇◇◇◇◇	32,857,000	환경보전비	-	76,181	2024. 2. 21. ~2024. 2. 26.
7	서울컨벤션고 학생안전강화사업 복도 안전개선 공사	◇◇◇◇◇◇◇◇	22,970,000	환경보전비	-	50,889	2024. 7. 5. ~2024. 8. 14.
합 계					2,029,715	394,741	

※ 자료: 서울컨벤션고등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 ◇◇◇◇◇◇◇◇은 여성기업으로 미계상 금액 반영하여도 추정금액 5천 만원까지 1인 수의계약 가능

조치할 사항

서울컨벤션고등학교장은

- ① 앞으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전기공사)에 따른 전기공사를 추진할 때에는 같은 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및 제4조(공사업의 등록)에 따라 전기공사업으로 등록 된 전기공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따라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하고,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적합하게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여 건설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현강학원 이사장은

이 건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